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제도 도입, 장애등급 제12급까지 직업훈련 대상 확대

노동부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훈련 대상을 현행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하고, 신체장애가 고정되기 전, 조기 직업훈련을 통해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등급 확정 전이라도 장애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요양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다.

산재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액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으며, 훈련대상 확대로 연간 18천명에 이르는 장애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로 다양한 의학 전문가 위원을 참여시켜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월 8일, 입법 예고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4일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4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희망근로 재해율 일반 사업장의 두배”

- 노동부, 안전교육 대폭 강화키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희망근로사업에서 총 1,834명('09. 11월말 기준, 월 평균 306명)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희망근로사업의 재해율(1.48%)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0.71%)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3월부터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업에 투입되기 전 최소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매월 희망근로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급박한 재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금번 강화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노동청 및 지정별로 관내 시·군·구청 등 희망근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과 “희망근로 산업재해예방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달 희망근로사업의 재해예방대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희망근로 사업장의 산재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방노동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별 안전보건관련 단체 등과 공동으로 희망근로 사업장 인근에서 산재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